#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90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전현희·한준호·김동아

박지원 • 박균택 • 서미화

김영환 · 이학영 · 윤종군

황운하 · 장경태 · 김남희

서영교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 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 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3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50"을 각각 "3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3분의 2"를 "5분의 3"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관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	2
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	
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	
한다.	<u>.</u>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가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이 100분의 <u>50</u> 이상	<u>30</u>
포함된 곳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	4
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	
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기·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이 100분의 <u>50</u> 이상	<u>30</u>
포함된 곳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략)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 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 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 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 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 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 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 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 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 인, 임대인 등 각각의 <u>3분의 2</u>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u>4.</u>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5. (현행과 같음) 제10조(상생협약)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 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 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 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 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u>3분의</u> ②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 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u>3</u> 분의 <u>2</u>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 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 ⑨ (생 략)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 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 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 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

지정) ①
<u>5분의 3</u>
②
<u>5</u> 분의 3
 ③ ~ ⑨ (현행과 같음) 세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1

구역	역	내	상인,	상기	가건들	는 임대
인	및	토	지소유	가자	각각	의 <u>3분</u>
<u>의</u>	2	0]	상에	해딩	강하는	자의
동.	의를	Ę ę	보어 신	]청	하는	경우
. :	3 (	섀	량)			

2. · 3. (생략)

②·③ (생 략)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 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 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 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 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 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

	<u>5분</u>
의 3	
2.·3. (현행과 같음)	
2. 0. (연하기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기	청 및
지정) ①	
<u>5분의 3</u>	
②	
	5
분의 3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기	젓 채
제) ①	

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1			
	-5분의	3	
	_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